

ESG위원회 운영규정

문서 번호 : 별책-총무-31
개정 번호 : 1
시행 일자 : 2026년 03월 26일
페이지 수 : 총 7 쪽

관리 번호 (CONTROLLED COPY)	
관리 책임자	

E S G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31 시행일자: 2026.03.26 페이지수: 3
F-2. 목 차	개정번호: 1

【목 차】

F-1. 제(개)정 기록부

F-2. 목 차

- 제 1 조 목 적
 - 제 2 조 적용범위
 - 제 3 조 역 할
 - 제 4 조 구 성
 - 제 5 조 위 원 장
 - 제 6 조 종 류
 - 제 7 조 소집권자
 - 제 8 조 소집절차
 - 제 9 조 결의방법
 - 제 10 조 부의 및 보고사항
 -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 - 제 12 조 통지의무
 - 제 13 조 의 사 록
 - 제 14 조 간 사
 - 제 15 조 규정의 개폐
- 부 칙

E S G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31 시행일자: 2026.03.26
목적, 적용범위, 역할, 구성, 위원장, 종류	페이지수: 4 개정번호: 1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흥아해운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역할)

- (1)위원회는 회사의 ESG(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)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한다.
- (2)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

- (1)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(2)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**독립이사**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(개정 2026.03.26.)
- (3)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(1)위원회는 **독립이사** 중 제9조의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(개정 2026.03.26.)
- (2)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(3)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종류)

- (1)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(2)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(3)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E S G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31 시행일자: 2026.03.26
소집권자, 소집절차, 결의방법, 부의 및 보고사항	페이지수: 5 개정번호: 1

제7조(소집권자)

- (1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2)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(1)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부의 및 보고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- (2)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(3)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
- (4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회사의 ESG 전략방향, 계획, 이행 관련 사항
- (2) 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
- (3)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필요 사항
- (4)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E S G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31 시행일자: 2026.03.26
관계인의 의견청취, 통지의무, 의사록, 간사, 규정의 개폐	페이지수: 6 개정번호: 1

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사록)

- (1)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(간사)

- (1)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(2)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E S G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31 시행일자: 2026.03.26 페이지수: 7
부 칙	개정번호: 1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3.26.)

1.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